
『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』 사업 성과조사 용역

제 안 요 청 서

2025. 8.

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

I. 사업 안내

1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 : 『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』
- 과 제 명 :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
- 사업기간 : 2023. 4. 1. ~ 2025. 12. 31.(33개월)
- 주관기관 :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
- 참여기관 : (재)광주테크노파크,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

2. 사업 목적

-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·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시스템과 실증 데이터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

3. 사업 주요 내용

- (기반구축) 지역 내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시설·장비 구축 및 활용
- (임상실증지원 플랫폼 구축) 주관기관-참여기관 연계 임상·비임상 실증 지원 체계를 통한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및 기술지원, 치과의료산업 국내·외 산·학·병·연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
- (기술지원) 임상의 매칭 임상 시험·평가·인증 지원(임상 IRB 작성, 사용성 평가 등), 시제품 및 제품고도화 지원, 비임상 시험·평가·인증 지원(비임상 실증, 사용적합성 평가 등)
- (인력양성) 디지털 치과의료산업에 적합한 치과의료 소재부품 개발 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업 및 지원기관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

4. 기대효과

- 치과의료소재부품 디지털화 및 제품고도화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제고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, 선순환구조 마련 가능
- 임상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실증 플랫폼 활용 디지털기술기반 치과의료소재부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 가능
- 지역 내 기구축된 생체의료산업 인프라 및 국내·외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로 치과의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 가능

Ⅱ. 과업 개요

1. 과업 개요

- 과업명 : 『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』사업 성과조사 용역
 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 - 과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
 - 용역비 : (부가세포함) 19,500,000원
 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(VAT포함 2,000만원 이하 용역)
- *관련근거 :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

2. 과업 목적

- 3개년 사업의 실증성과를 계량화하고 분석함으로써, 향후 치과의료소재부품 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증자료 확보
-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 도출을 통해 지역 내 유사 분야 기업으로의 성과 확산과 모범 사례 공유
-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분석을 통해, 향후 유사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보완
- 실증연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,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 기반 마련
- 수혜기업의 실질적 체감성과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R&D 기획 및 기업-정책 간 격차 해소에 기여

3. 과업 주요 내용

- 사업기간 내 성과조사 및 분석 시행
- 성과분석 데이터 기반 참여기업 및 기관별 우수사례 도출
- 사업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- 정책적 시사점 및 발전 방향 제시

Ⅲ. 과업 주요 내용

1. 과업 기간

- 수행 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

2. 추진 목표

-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(2023~2025)의 정량적·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하고, 사업성과의 확산과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

3. 추진 내용

- 성과조사: 사업의 정량적·정성적 성과 데이터 수집 및 통계 분석
- 우수사례 도출: 참여기업/기관 연계 히스토리 기반 대표 성공 사례 도출
-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: 주요 애로사항, 개선 필요 요소 등 제시
- 정책 제언: 성과 기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도출

4. 추진 체계

구분	역할	비고
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	• 용역 수행관리 및 결과 평가	발주기관
용역기업	• 용역 수행	사업수행기관

5. 과업 범위 및 세부 내용

가. 조사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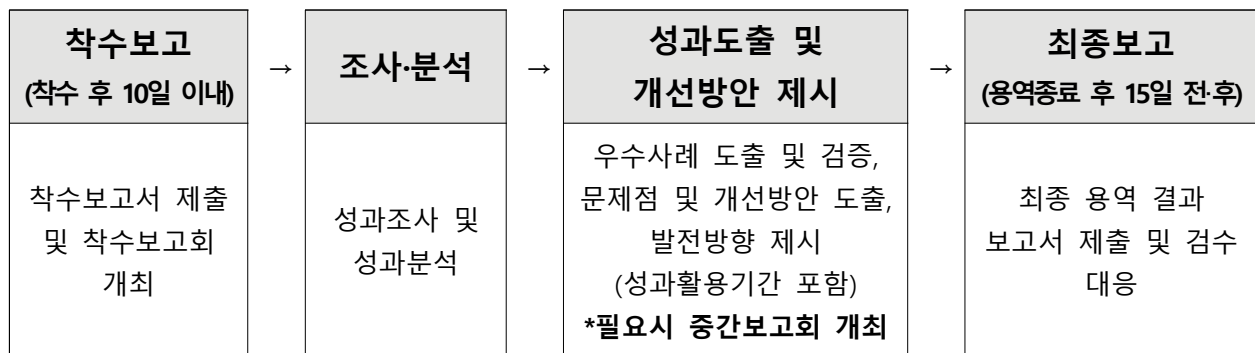
- 시간적 범위: 2023년~2025년(3개년, 사업기간)
- 내용적 범위: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와 참여기관별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히스토리 기반 우수사례/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, 정책 제언

나. 과업 세부내용

- 사업 기간(2023~2025년) 내 성과조사 및 분석 시행
 - 정량적 성과조사: 3개년(2023~2025) 기간 동안 추진된 지원사업에 대한 정량적(매출, 수출, 고용, 인증, 특허 등) 성과 조사 및 분석
 - 정성적 성과조사: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(네트워크 구축, 임상실증연계 효과 등) 조사 시행
 - 성과분석: 대조군(비수혜기업) 설정을 통한 수혜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성과 진단 및 분석

- 성과분석 데이터 기반 참여기업 및 기관별 우수사례 도출
 - 우수사례 도출: 수혜기업 기업 대상 5건 이상, 참여기관 개별 및 기관 별 지원프로그램(임상·비임상 실증, 시제품 제작, 전문가 활용 등) 연계 히스토리 기반 우수사례 5건 이상 도출
 - 우수사례 검증: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우수사례 검증 절차 시행
- 사업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 - 문제점도출: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, 한계, 미흡 사례 등 도출
 - 개선방안 제시: 도출된 문제점별 정책적·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
- 정책적 시사점 및 발전 방향 제시
 - 정책적 시사점 제시: 향후 지역 치과의료소재부품 산업 고도화, 글로벌 진출,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제언
 - 성과활용 기간(2026~2030년) 발전 방향 제시: 성과활용 기간 내 인프라 활용 확대, 수익금 확보, 기업연계 활성화 전략 등 발전 방향 제시

다. 수행 절차



6. 산출물(용역선정 업체에 요청하는 산출물)

- 용역 결과 보고서 20부(A4 용지 100매 이상) 및 USB 1식
 - USB 1식: 용역결과보고서 한글파일 및 발표 PPT 파일 등 일체
 - 용역 결과보고서: 원본1부, 사본 19부 양면 제본 후 납품

Ⅳ. 과업수행 일반지침

1. 과업의 개요

-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과업수행업체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성과 조사(발주 사업명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.

2. 과업의 일반 사항

- 본 용역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“갑”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·지시에 따른다.
-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 - “갑”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 -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
 -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(저작권, 특허권 등 지적, 물적 소유권)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,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.

3.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

-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“갑”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- 용역기간은 “갑”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.

4. 과업의 준수사항

- “을”은 본 과업지시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,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- “갑”은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

변경할 수 있다.

-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.
-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“갑”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핵심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 또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중 “을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갑”에게 교체 핵심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.

5. 과업수행 성과물

- 성과품 제출내역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

단 계	산 출 물	출력물	제출일정
수행 완료	용역 결과 보고서	20부	검수완료 시

- 용역성과물은 “갑”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 영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“갑”에서 보완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용역성과물의 귀속
 -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“갑”에 있고, 과업 수행완료 즉시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를 “갑”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